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690
----------	-----

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김혜련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6월 17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정책사업으로서 집행하고 있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사업의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소속감을 확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생활 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찾동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책

무를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도 찾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찾동 사업의 구체적 사업 시행방식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찾동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되, 찾동 업무를 통해 인지하게 된 개인의 비밀을 준수하며, 찾동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찾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과 협력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음.(안 제4조)
-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역내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을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통반장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없음.

III.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제정안의 취지 및 현황

가.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 본 제정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를 통해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찾동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들도 찾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찾동 사업의 구체적 사업 시행방식과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찾동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찾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 되었음.

나.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검토

- 동(洞)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소속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민과 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

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동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 '14.9.14)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조직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에서 더 나아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 결합된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 거주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지역 내 해결력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공공안전망과 주민 관계망을 결합한 통합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주민”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¹⁾) 준용하였고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²⁾를 인용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주민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계를 말한다.
- 2.“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 3.“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 4.“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동 조항의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둠으로써 찾동 사업 지원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

-
- 1)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과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나. 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안 제1호), 지역사회 돌봄 수요 발굴 및 지원(안 제2호),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안 제3호), 지역사회 주민 중심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안 제4호)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추진체계 구축' 및 '필요시책'과 '사업의 발굴·추진'에 관한 책

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찾동 사업의 조직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치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 및 사업 적용을 함으로써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 지역주민의 시 또는 자치구 찾동 사업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규정을 둠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역 친화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필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안 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운영 및 지원체계3.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4. 소요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 다만, 안 제1항과 제2항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와 제3호와 유사하여 찾동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두 조례간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 본 제정 조례와 다른 조례가 경합될 시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라.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이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기본방향’, ‘운영 및 지원체계’ 및 ‘소요 재원 확보와 배분’ 등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안 제4조에서 언급한 우려와 같이 본 제정안과 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이 유사할 수 있는 등의 혼선이 예상됨.
- 또한, 찾동 사업에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 및 자치구의 개별 정책 등이 포함 될 수 있음으로 인해 개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의 기본 방향’ 여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찾동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서울시 여러 실·국에서 찾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정책 사업 관련 계획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세부 사업들에 있어서도 각 실·국 별로 시장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바, 상호간 충돌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겉을 수 있는 종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안 제6조)

- 안 제6조 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에 대한 규정으로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의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5월말 까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용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임.

안 제6조(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업의 범위(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을 발굴 지원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2.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
 3.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
-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 안 제1항 하단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주민 또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방문으로 오해할 소지가 존재하고, 가정방문 대상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2항은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지역 내 서비스 연계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비용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 조항’과 ‘안 제15조의 복지서비스 제안을 위한 예산지원 조항’이 있으므로 상호간 중복된 조항이라고 하겠음.

사. 공동사업추진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 공동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 없음.
 - 다만, 안 제8조는 안 제7조의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규정이므로 제안한 제8조 내용의 ‘제8조의’를 ‘제7조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는 안 제7조제1항제2호 시행을 위한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과 운영, 비용, 인력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수당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항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의 주체는 자치구가 아닌 자치구청장이므로 운영주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그러나 구청장이 채용하는 통합관리사에 대한 업무수당의 지원은 관련 지원 근거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제9조(위기기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에 위기기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업무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 안 제2항의 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와 관련해서는 소관기관의 협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자. 통장 및 반장 참여(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발굴하여 신고하는 통·반장의 지역 내 활동에 관한 역할 부여 사항과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평가하여 통·반장에게 예산범위 내 성과금을 지원하는 규정임.
- 통·반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자치구별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하는 바, 통·반장으로 하여금 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각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찾동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업무수행을 고려할 때, 통·반장과의 협업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통·반장의 업무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통·반장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로 수정·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10조(통장 및 반장 참여) ①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차. 역량강화(안 제11조)

- 찾동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및 자치구 찾동 공무원 대상 찾동 관련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등 찾동 참여주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카. 주민과 협력강화(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저변확대를 위한 주민 위촉 시 물품 및 소요경비 지급 근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다만, 안 제12조는 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비용의 지원 조례와 중복되므로 안 12조에 따라 지원한다면 이중지원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제12조(주민과 협력 강화) ① 시장은 찾동 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타. 비밀준수(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찾동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직무상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급여신청·지원, 사회보장정보 처리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 규정 존재하므로 안 제14조의 비밀준수는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며,
- 안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14조(비밀준수) 찾동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예산지원(안 제15조)

- 안 15조는 예사의 범위에서 찾동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바,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제15조(예산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찾동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 및 사업 적용을 함으로써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 지역주민의 시 또는 자치구 찾동 사업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규정을 둠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역 친화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필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 시장에게 찾동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추진체계 구축’ 및 ‘필요시책’과 ‘사업의 발굴·추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찾동 사업의 조직 확보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을 확고

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통한 지역복지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봤을 때,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개별 조항의 경우 내용상 중복 및 상위법 저촉 등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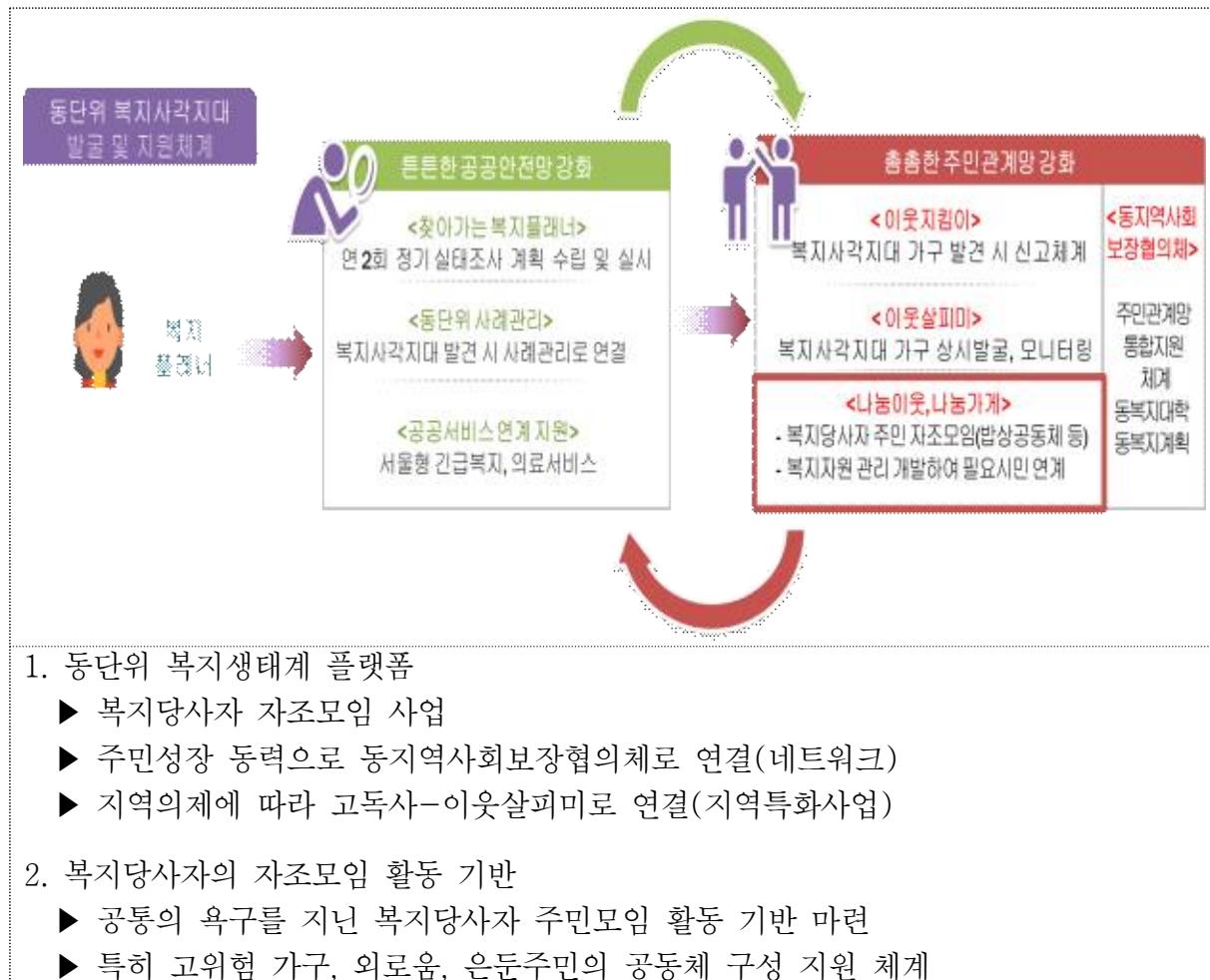
참 고 1

찾동 사업 현황

□ 시·구·동 역할 및 협업체계

구 분	서울시	추진지원단	자치구	동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사업 기획 • 사업 예산교부 • 사업 점검 및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사업 계획 • 나눔가게 업무카이드리인 제작 • 자치구 현장 컨설팅 • 자치구, 동 담당자 교육 협력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단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예산 교부 • 구단위 교육진행 • 실행동 담당자 간담회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 • 나눔가게 찾기 • 나눔가게 성장지원 • 나눔가게 활동 촉진 • 성과공유 추진 등

※ 복지생태계의 분야별 역할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참석위원 찬성 9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690
------------	-----------

제안년월일 : 2018년 6월 1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강화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사업 수행 시 혼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 등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찾동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 신설(안 제5조).
- 다. 시장의 찾동 지역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임위 제출 및 보고를 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로 수정함(안 제6조).

- 라.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 마.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의 운영주체가 자치구청장으로 이에 따라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통장 및 반장 참여에 관한 필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주민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운영경비 조항 및 창동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취급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및 안 제14조).
- 아. 예산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중 “동주민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이바지함”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 수정한다.

안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찾동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5조(기본 계획 등)는 안 제6조로 수정한다.

안 제6조(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는 안 제7조로 하여 안 제6조 중 “시행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사업의 범위)는 안 제8조로 하여 안 제7조제1항 중 “경우에는 직접”을 “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으로, 제3호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3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를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9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는 안 제10조로 하여 안 제9조 제1항 중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를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항 중 “배치할 수 있다.”를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10조(통장 및 반장 참여)는 안 제11조로 하여 안 제10조제2항 중 “활동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안 제11조(역량강화)는 안 제12조로 한다.

안 제12조(주민과 협력강화)와 안 제14조(비밀준수)는 삭제한다.

안 제15조(예산지원)는 안 제14조로 하여 안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으로, “범위에서 찻동 운영비의”는 “안에서 찻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로 수정한다.

안 제16조(시행규칙)는 안 제15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조문 대비표(안)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찾아가는 <u>동주민센터</u> 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u>시행계획</u> 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u>시행계획</u> 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 <u>시행계획</u> ----- ----- -----. ② ----- <u>시행계획</u> ----- ----- ----- ----- -----.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직접</u>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 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2.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	제8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u>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 ----- 2. -----

제 정 안	수 정 안
3.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	3. -----에 대해 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 -----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 -----.
제9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 -----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 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례 관리사에게 업무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10조(통장 및 반장 참여)</u> ① 시장은 구 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1조(통장 및 반장 참여)</u></p> <p>① ----- ----- ----- -----.</p> <p>② ----- 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삭제></p>
<u>제11조(역량강화) (생략)</u>	<p><u>제12조(역량강화)</u> (제정안 제11조와 동일)</p>
<p><u>제12조(주민과 협력강화)</u> ① 시장은 찾동 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삭제>
<u>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생략)</u>	<p><u>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u> (제정안과 동일)</p>
<u>제14조(비밀준수) 찾동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u>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p><u>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5조(예산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찾동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주민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 체

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찾동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주민이 시 또는 자치구의 찾동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
 4. 소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1.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2. 빈곤위기가정,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
3.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 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및 복지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통장 및 반장 참여) ①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찾동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동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의 시장 및 구청장이 찾동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 ②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 후단의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